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67
----------	-----

2023. 12. 12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29일

-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 하고,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외국인주민의 정의 및 지위(안 제2조 및 제3조)
-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(안 제6조 및 제7조)
-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8조 및 제9조)
- 업무의 위탁,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 등(안 제15조~제1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은 인구청년정책담당관, 다문화가족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었음.
-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는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고, 행정 및 사업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외국인주민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, 외국인 주민 등 용어를 명료하게 정의하였다고 판단됨.
- 안 제3조는 외국인주민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, 외국인주민이 단순히

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**안 제5조**는 도지사에게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,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,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다만, 지원계획 수립 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주민에 관한 일원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**안 제6조**는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함.

- **안 제7조**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, 도지사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.

- **안 제8조**는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, **안 제9조**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기능을 규정함.

- **안 제17조**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, **안 제18조**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

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었음.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또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외국인주민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

제3조(외국인주민의 지위)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, 도로부터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도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출입국관리법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.

제7조(지원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
3. 외국인주민의 고충·생활·법률·취업 등 상담
4.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 행사 개최
5.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·교육 사업

- 6.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
 - 7. 외국인주민에 관한 통계, 실태 등 현황 조사
 - 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관리실장

2.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

나. 교육청·경찰청·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의 업무 책임자

다.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라.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·방법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,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
6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

제14조(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16조(세계인의 날) 도지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

1. 기념행사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3. 명예도민증 수여 등 유공자·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제17조(포상)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8조(명예도민)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.

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,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)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,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업무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공공기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3.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정책의 연구·추진 등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,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,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재한외국인,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
2.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
3.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
4.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,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
5.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
6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영주권자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(이하 “영주권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

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4조(난민의 처우) ①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특별기여자의 처우)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이하 “특별기여자등”이라 한다)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, 「난민법」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
2. 고용 정보의 제공,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

제15조(국적취득 후 사회적응)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(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

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세계인의 날)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

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.

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0조(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)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,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·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민간과의 협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·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이민정책연구원) ① 「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장려하고,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·연구·자문·정보교환
2.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
3.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·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·지원
4.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
5.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·정기간행물·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·보급
6.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정책의 공표 및 전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·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국적법

제3조(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(이하 “외국인”이라 한다)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(認知)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1.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일 것

2.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 다만, 법무부장관은 연령,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, 심사,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폐지하고, 본 조례 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외국인 정책 전문가, 정책 당사자인 외국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안 제8조(위원회의 구성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추계의 전제
 - 위원회 출석수당 (연간) : 100,000원 × 10명 × 2회 = 2,000천원
 - * 출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
- 추계 결과 : 연간 2,000천원,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0,000천원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세 출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위원회 수당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재원 조달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
자체수입	지방세	10,000	2,000	2,000	2,000	2,000